

경제혁신
강제와 자율을 바탕으로
미래를 열어갑니다.

대한민국 제도의 힘,
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
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http://www.motie.go.kr

희망의 새시대

2016년 3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3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(043-870-5440), 안광희 연구관(5441)
생활제품안전과 윤기환 과장 (043-870-5450), 이경희 연구관(5451)

전기용품,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.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공포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”을 공포하고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

* “전기용품 안전관리법(전안법)”과 “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(품공법)” 통합법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1년 후 시행

** 법률 용어 중 기존 공산품의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

- 그 간,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,
 -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제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,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
 - 전기자전거,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
 -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됨

-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하였음

-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,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함

* 인증을 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되어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경감하게 됨

-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,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함

-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커져 인증정보 게시가 필요함

* 온라인 쇼핑물 거래 금액 : '13년 : 38.5조원, '14년 : 45.3조원, '15년 : 53.9조원(출처 : 통계청)

-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 양재동 The-K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(3.3(목), 15:00~17:00)를 개최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였음

- 설명회에서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임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(☎ 043-870-5440), 안광희 연구관(☎ 043-870-5441), 생활제품안전과 윤기환 과장(☎ 043-870-5450), 이경희 연구관(☎ 043-870-54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

◆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, 전기용품·공산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·후에 적용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

- 제품출시 전 :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(1974.1.4. 제정)」
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(1967.3.30. 제정)」
- 제품출시 후 : 「제품안전기본법(2010.2.4. 제정)」

○ (시장출시 前)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 인증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

* 제품별 위해수준에 따라 3단계(안전인증>안전확인>공급자적합성확인)로 안전관리

안전인증 (50종, 22%)		안전확인 (94종, 40%)	공급자적합성확인 (116종, 40%)
높음		(소비자의 위해도)	낮음
구 분	대상품목(260) (전기용품/공산품)	적 용 절 사	
① 안전인증	50종(39/11)	제품시험 + 공장심사	인증 (KC마크)
② 안전확인 (자율안전확인)	94종(61/33)	제품시험	고 (KC마크)
③ 공급자적합성확인 (안전·품질표시)	116종(73/43)	제품시험	판매 (KC마크)

○ (시장출시 後) 안전성조사* 또는 제품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리콜(권고 또는 명령) 및 고발 조치

<제품안전관리 체계도>

